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'98. 7. 1
발 의 자 : 김재영의원의15인

1. 제안이유
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부산광역시 구·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조례가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사하구의회위원회 조례를 의원 정수에 맞도록 위원 정수를 개정하고,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상임위원회의 설치 : 구성인원을 변경(안제2조)

당 초	변 경
○ 총무사회위원회 (13)	○ 총무사회위원회 (7)
○ 도시산업위원회 (16)	○ 도시산업위원회 (8)
○ 의회운영위원회 (9)	○ 의회운영위원회 (7)

나.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,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라는 규정을 신설(안 제4조 제2항,제3항 신설)

3. 관련법령

-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
- 부산광역시 구·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총무사회위원회 7명
2. 도시산업위원회 8명
3. 의회운영위원회 7명

제 4 조중 제2항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선출된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무사회위원회 <u>13명</u> 2. 도시산업위원회 <u>16명</u> 3. 의회운영위원회 <u>9명</u> <p>제4조(상임위원회위원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생략) ② (신설) ③ (신설) 	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무사회위원회 <u>7명</u> 2. 도시산업위원회 <u>8명</u> 3. 의회운영위원회 <u>7명</u> <p>제4조(상임위원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 ③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선출된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